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922

발의연월일: 2025. 4. 17.

발 의 자:김교흥・허종식・노종면

허성무 • 문진석 • 장철민

홍기원 • 정일영 • 윤준병

이훈기 · 김윤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외적으로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을 준비해야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음.

글로벌 탄소중립 환경규제로 인해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음. 제조업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출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특히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인 RE100은 글로벌 대기업과 바이어들이 공급망 참여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이에 동참하지 못한 기업은 시장진입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또한, 지방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 인구 유출은 투자 감소와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의 붕괴로 이어지는 지방소멸 문제로 직결됨.

지역별로 환경에 적합한 재생에너지원을 찾아 발전하고, 친환경 전기를 소비할 산업단지를 인근에 유치하는 RE100클러스터를 조성하여지방소멸 문제 해결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달성을 함께 도모할수있음.

이에 정부의 RE100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 단체에 대해 특별교부세로 재정을 지원하여 RE100 참여를 독려하려는 것임(제9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교홍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지역 역점시책"을 "지역 역점시책,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 제12조 및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계획의 이행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① 특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①		
별교부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교부한다.	,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	3		
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			
이 필요한 사업, <u>지역 역점시</u>	<u>지역 역점시</u>		
<u>책</u>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	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u>」</u>		
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	제11조, 제12조 및 제66조의2		
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이행 실		
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	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당하는 금액	<u>대한 재정 지원</u>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